

한경국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경국립대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함)라 칭한다.

(영문 :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 지원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모교 소재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회원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 ②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③ 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 ④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 ⑤ 기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정회원은 안성농업학교,안성농업중학교,안성농업고등학교,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안성농업전문학교, 안성농업전문대학, 안성산업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를 졸업한 자 및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②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한 자와 재학하였던 자.
-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농업과학교육원 각 과정 수료자, 마이스터대학 졸업자, 모교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 ④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와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명예회장 2인
- ② 고문 약간명
- ③ 자문위 30인 내외
- ④ 회장 1인
- ⑤ 수석부회장 1인
- ⑥ 운영위원장 1인
- ⑦ 부회장 100명 내외
- ⑧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이사 50명 내외
- ⑨ 이사 500명 내외
- ⑩ 감사 3인
- ⑪ 재무국장 1인
- ⑫ 총무국장 1인
- ⑬ 사무국장 1인
- ⑭ 사무차장 2인

제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사무국장은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등록된 각급 동문회, 지역동문 및 직능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직 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추천이사로 한다.
 1. 당연직 이사는 총동문회 모든 임원
 2. 추천이사는 각 학과, 대학원, 지역, 직능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자.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⑥ 사무국장, 재무국장, 총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운영이사는 해당분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능에 맞는 임무를 수행 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본회 사업이나 발전을 위한 사항 등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의 개정 임원 선출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 ⑤ 운영이사는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⑦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간사를 감독한다.

- ⑧ 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재무 및 회계회무를 처리한다.
- ⑨ 총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와 행사진행시 기획과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하여야한다.

② 임원은 임원 등록금을 납부한다.

제12조(명예회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 ① 재직 기간 중인 모교총장
- ② 직전 전임회장

제13조(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① 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동문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② 고문은 총회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자문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둔다.

- ① 자문위원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동문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본회 주요 현안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 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15조(총회)

-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승인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사업 및 예산안 승인
 4. 사업 및 결산 보고
 5.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16조(이사회)

- ① 본회 이사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 할 때 또는 이사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차기회장, 감사의 추대
 2. 사업계획, 예산안 및 사업보고, 결산 심의.
 3. 임원 위촉에 대한 승인
 4.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5. 연회비, 입회비, 평생회비의 금액 조정.
 6.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부위원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 계획
 3. 이사회에 상정 할 예산 및 결산 안

4.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5.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6. 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추천
7. 포상 및 징계
8. 회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9. 지부, 지회 등 조직 승인에 관한 사항

제18조(분과위원회)

- ① 본회에 기획, 총무, 재정, 조직, 사업, 발전, 협력, 홍보, 체육, 여성, 장학, 특별, 대학원동문회, 지역동문회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운영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 : 본회 발전을 위한 년차 계획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조정
 2. 총무분과위원회 : 본회 사무 행정 및 기록문서 보관과 목적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무분과위원회 : 본회의 재무 및 각종 기금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직분과위원회 : 본회 조직 강화사업 및 지부, 지회, 직능별 조직 지원 사업
 5. 사업분과위원회 : 본회 대내외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발전분과위원회 : 모교 및 본회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협력분과위원회 : 대외 협력 및 모교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8. 홍보분과위원회 : 본회 대외 홍보 및 문화 활동과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등에 관한 사항
 9. 체육분과위원회: 본회 체육행사에 관한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0. 여성분과위원회: 여성동문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1. 특별분과위원회:
 - 가. 모교 발전과 본회 운영에 관한 포괄적 사항
 - 나. 등산, 낚시, 골프 등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 지원

12. 장학분과위원회: 장학사업 및 기금의 모금과 운영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3. 대학원동문분과위원회: 모교, 본회와의 유대 결속에 관한 사항
14. 지역동문회분과위원회: 지부, 지회, 기타 한경인 모임 지원 사업

제 5 장 조 직

제19조(하부조직) 본회의 산하에 각 학과 동문회, 대학원 동문회, 각 특별시·광역시·도·시·군 지역동문회 및 직능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등록) 본회의 하부 조직으로 각급 동문회가 설치되거나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는 즉시 회원 및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① 연회비, 평생회비
- ② 회장단 및 이사 분담금
- ③ 입회비
- ④ 찬조금은 모든 동문 및 명예동문이 금액과 횟수에 제한없이 납부할 수 있다.
- ⑤ 기타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로 한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당해 연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 회비납부) 임원의 등록금 회비 납부는 다음과 같다.

- ① 회 장: 5,000,000원 이상
- ② 부회장: 1,000,000원 이상
- ③ 이사진 및 자문위원: 200,000원 이상

제 7 장 상 별

제25조(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27조(상벌 규정) 본회의 상벌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28조(사무국) 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행)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① 동문회가 미조직 된 각급동문회와 지, 분회는 그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회장단이 이사 및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2. 4. 28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 4. 24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 4. 30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08. 4. 27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 4. 25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 4. 40 개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 7.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3. 7. 21부터 시행한다.